

방재와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는 예가 많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서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용어를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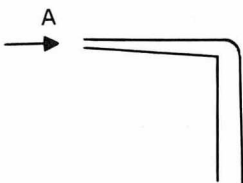
방재용어

● 접촉저항(contact resistance)

두 물체의 접촉면에 존재하는 전기 저항을 말한다. 접촉면에는 정전적인 접촉전위차 외에 전류에 대응하는 불연속적인 전위차가 생기는데 이것과 전류와의 비가 접촉저항이다. 이 저항은 접촉하는 돌출부의 형태, 단면적, 산화피복, 흡착기체의 상태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면 접촉저항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파토크관(pitot tube)

그림과 같이 한 끝 A가 열린 관을 흐름에 평행하게 두면, A점은 고임점이 되기 때문에 관내의 압력을 측정해 흐름의 총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유체의 총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피토크관, 또는 총압관이라고 한다.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수압과 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압계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계기로서, 측정된 수압(P)과 노즐의 구경(D)을 가지고 1분간 방수량(Q)을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Q=0.65d^2\sqrt{P} \quad [l / \text{min}]$$

● 부하(load)

에너지를 발생 또는 변환하는 장치의 출력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전기회로에서의 부하는 수동소자로 볼 수 있으며 그 특성은 임피던스로 표시되는데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기계·기구가 부하에 해당된다. 부하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상태인 무부하와 정격출력보다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부하, 정격출력 이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정격부하 등이 있다.

● 노한도(限度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성년남자가 매일 8시간 노동을 계속하여도 중대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가스나 증기의 최대한의 농도를 노한도라고 한다. 보통 p.p.m. (parts per million, 백만분율)으로 표시한다.

● 하중 연화점(load bearing softening point)

내화물에 하중을 부가한 상태로 가열했을 때에 연화변형을 일으키는 온도. 내화도보다 실용상태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낸다.

● 연소위험(combustion hazard)

각 물질의 화재위험성은 발화위험, 연소확대위험 및 피손성의 3요소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소위험은 발화와 연소확대의 양 위험요소를 포함한다.

연소확대위험성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각 물질의 연소속도, 연소열, 융점, 비중, 수용성, 형상, 수량, 포장 상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제요소가 경합하여 위험도의 대소가 생긴다.

● 가연성가스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프로판·에틸아민·벤젠 및 그밖의 가스로서 공기와 혼합된 경우의 폭발하한이 10%이하의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이상인 것을 말한다.

• 독성가스

아크릴알데히드 · 아황산가스 · 암모니아 · 불소 · 염소 · 브롬화메탄 · 염화메탄 · 산화에틸렌 · 시안화수소 · 포스겐 · 트리메틸아민 및 그 밖의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의 것을 말한다.

보험용어

• 공동보험(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 · 공동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의 형태로는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인가된 인수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도덕적 위험(moral risks or hazards)

실체적이나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 기인할 수 있는 인위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기, 방화나 살인과 같은 위험이 이에 속한다.

•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며, 또 어느 시점에 있어서 보험기

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중복초과보험인 경우를 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 연기손해(smoke damage)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이 인정된다. 따라서 화재에 수반되어 일어난 연기손해는 당연히 보상된다.

• 보험증권의 배서(endorsement on ortopolicy)

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 뒷면의 소정란에 기입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에 규정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위험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세입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 보험계약의 요소 또는 조건의 변경 등이 있다.

• 위험의 변경(alteration of risk)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위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사정의 변화, 즉 위험의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보험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계약의 실효 · 해지 등의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위험의 변경 및 증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정미손해(net loss)

정미보험료에 대응하는 말로서 여러가지 내용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보험금에서 보험회회수액을 공제한 것이며, 둘째는 보험금에서 재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며, 셋째는 보험금과 재보험금 환급의 합계에서 재보험금과 보험회회수를 합한 합계를 공제한 잔액이며 이를 순보험금이라고 한다.

•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도 낙성계약성을 갖는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사실이 있으면 보험증권의 교부가 없어도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약관 등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되며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 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 위험보통의 원칙

보험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원칙이다. 보험사고의 원인을 한정하는 위험개별의 원칙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㉞